

● 제322회 ●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608)

2024. 3.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강석주 의원 발의]

의안번호 1608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발 의 자 : 강석주 의원 (10인 찬성)
- 나. 제출일자 : 2024년 02월 05일
- 다. 회부일자 : 2024년 02월 07일

2. 제안이유

-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의 시스템 고도화에도 최근 경제적 위기 등 갑작스러운 생활환경변화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지역주민의 관심과 역할을 높여 지역사회 속에서 위기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의 연결고리를 복원하기 위한 이웃과 이웃이 서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따라서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을 통해 지역주민이 이웃의 위가구를 발굴하고, 행정기관은 제도권의 복지 혜택 지원을 통해 위기극복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촘촘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곳의 자치구가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으므로, 지역편차의 해소를 위한 제정 필요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다. 지원사업 및 민간협력체계를 규정(안 제4조, 제5조)
- 라.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기준 규정(안 제6조, 제7조)
- 마.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한 표창기준 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제정안의 제안 개요

-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¹⁾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음. 복지 사각지대란 복지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충족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급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급여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급여의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급여가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음.²⁾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사회의 위기가구를 찾는 것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음.³⁾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현 동행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 정책을 수립·운영해온 바 있음.
-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에서는 위기가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2014년 2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박모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도움을 끊은 사건.

2) 최지선·허숙민(2020).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2.

3) 이영글·박성준·함영진(2021).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48.(1) 97-121.

-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⁴⁾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동법 제12조제1항⁵⁾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또한, 같은 조에서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①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
7.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
- 7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7의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 7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수도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
5.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이 입소 탈락자나 퇴소자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통신요금 등을 말한다)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
8.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9.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금의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
10.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정보
11.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해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제정안은 1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6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2조(정의)	제7조(포상금)
제3조(시장의 책무)	제8조(표창)
제4조(지원사업)	제9조(정보의 보호)
제5조(민관협력체계)	제10조(시행규칙)
	부 칙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구청장이 위촉한 통장 및 반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및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4곳):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며, 경기도는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

- 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합의된 용어는 아니나, 넓게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의미하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의 사각지대까지를 지칭함.
- 여기서 “복지사각지대”란 공공부조 사각지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①공적지원이나 급여의 수급 자격이 있는데 못 받는 경우 ②수급 자격이 있으나 그 지원이 충분

하지 않은 경우 ③수급 자격이 되지 않아 지원이 없는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⁶⁾

- 본 조례안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①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에서는 위기가구를 정의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이러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조례안의 목적이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정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시장의 책무(안 제 3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을 확대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과적인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6)김윤영(2022). “복지사각지대란 무엇인가?”. 공유복지플랫폼 2.0 웹페이지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mno=10001&bno=97510&pno=10002&ppno=&opno=&>

- 또한, 동법 제14조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지원사업 및 민관협력체계 (안 제4조, 제5조)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홍보사업

제5조(민관협력체계) ① 시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복지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23년 기준 서울시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사업을 기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례상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력을 활용하여 빈곤·돌봄 위기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 사회적위험 증가에 선제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구축하는 인적안전망으로써, 자

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지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 지역주민을 의미함.

- 서울시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수는 2023년 기준 32,925명이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발굴한 복지위기가구 지원연계 건수는 2023년 총 88,278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서울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위기가구 발굴 인원 및 복지위기가구 지원연계 건수⁷⁾

연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수	복지위기가구 발굴인원	1인당 발굴인원	연계건수
2020	25,329명	34,784	1.37	67,485건
2021	25,166명	51,082	2.03	83,073건
2022	30,155명	31,857	1.05	102,278건
2023	32,925명	46,765명	1.4	88,278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단위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규정된 법정기구이며, 2023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수는 4,373명,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수는 8,567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기준, 이와 관련된 서울시의 각 사업 예산은 다음과 같음.

7)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5234(2023.3.22.) “2023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계획”.

<표>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예산

예산구분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지역기반복지공동체 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비	255,000천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 지원	576,675천원

<표> 2024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관련 예산

예산구분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지역기반복지공동체 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비 지원	50,000천원

- 운영비는 2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회의 개최, 교육, 홍보물 제작 등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됨.
-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는 동행센터 운영, 우리동네돌봄단 등을 운영하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지원사업과 민간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기운영 중인 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지역 주민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방

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6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현재 서울시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 및 유형별로 복지 위기가구를 쉽게 발굴하기 위한 휴대용 안내 보드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복지위기가구가 발굴된 경우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23년 6월부터는 자치구 SNS를 통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략한 내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온라인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화면

마. 포상금 및 표창 관련 사항 (안 제7조, 제8조)

- 안 제7조에서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7조(포상금) 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8조(표창)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2022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에서 제시한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기 이웃을 발견 및 신고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포상 등의 구체적인 유인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음.⁸⁾
- 현재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포상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자치구⁹⁾가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

8) 정용제(2023).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국회입법조사처.

9) 24.2월 기준 영등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금천구, 서초구, 송파구, 광진구 외 전 자치구 제정

- 이 가운데 ‘23년 12월 기준 자치구별 위기가구 포상금 실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서울시 자치구 위기가구 포상금 지급 현황

연 번	자치구	조 례 명(시행일자)	해당 연도	신고 건수	포상금 지급액	예산액 (천원)
1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21. 4. 28.) * 2023.9.20.자 조례 일부개정 공포·시행으로 건당 포상금 지급액 인상 (3만원→5만원)	2021	11건	15만원 = 5건 × 3만원	1,500
			2022	7건	9만원 = 3건 × 3만원	3,000
			2023	4건	14만원 = (3건 × 3만원) + (1건 × 5만원)	3,000
2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21. 9. 16.)	2022	5건	25만원 = 5건 x 5만원	750
			2023	4건	20만원 = 4건 x 5만원	750
3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22. 11. 8.)	2023	46건	33만원 = 11건 × 3만원	1,500
4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23. 3. 17.)	2023	3건	30만원 = 3건 × 10만원	2,000

- 한편, 자치구에서는 유사조례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포상 제외 규정을 지정해 해당 규정에 해당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2 제6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본 조례안 제7조에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중복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¹⁰⁾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여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조례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지급받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 하지만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는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명시적·선언적 성격의 조항으로, 실제로 포상금 세부지급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지급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10)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지역사회 주민 등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여 신고하거나 그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집행 기관 의견 : 동의

위기 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포괄적 근거 조례로서 의미가 있어 제정에 이견 없음.

3 종합의견

-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고독사, 취약 청년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및 지원 필요성은 점차 증가¹¹⁾하고 있기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위기가구 지역발굴 지원 및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 제정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행정기관에 제보하여 어려움의 극복을 도운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강화에도 위기가구의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위기가구 발굴 이후의 지원을 위한 제도확충, 급여연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¹²⁾
-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기가구의 발굴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민관협력의 강화 등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11) 관계부처 합동(2022.11).“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12) 함영진 외(2023). 『복지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안적 고찰-취약계층 발굴정책 개선을 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